

2023년도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7.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8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53건(안전번호 제2023-121507호~12365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21507호~121516호(순번 1번~10번)는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21517호~121524호(순번 11번~18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21525호~121557호(순번 19번~51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전송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121558호~123659호(순번 52번~2153번) 불법 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49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0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16940호~1714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20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97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97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

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556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0번은 민원인 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방송 불법복제물 총 12건임.

해당 저작물은 현재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서비스 중인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0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0번을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 내지 1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 등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합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1번 내지 18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리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보호원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불법복제물들에 집중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B 위원: 중고책을 본인이 스캔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고책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 김선화 선임: (자료를 제시하며)중고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고 가격이 3~5천원대로 PDF 판매만 게시하고 있음.

- C 위원: 거래내역이 확인이 되는지?

- 김선화 선임: 사이트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1회성이기 때문에 판매가 완료됐다고 게시되는데, PDF는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팅한 인원수만 확인되고 실제 거래 여부나 횟수까지는 알 수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 내지 1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번 내지 5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 ‘♠♠’, ‘▣▣▣’ 등에서 ‘EV BOX’ 또는 ‘U B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39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9번 내지 51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해서 전송중단하는 것 보다는 OSP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추세를 볼 때 OSP한테 모니터링하고 조치한 결과를 요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김선화 선임: 사무처 조사 결과 '♣♣'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모니터링을 해서 판매를 중지하고 '이 상품은 직권중지되어 상세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의 경우 안전으로 올라오고 사무처에서 조사하는 시점에는 판매 중지된 게시물이 많은데, 자체 모니터링 결과 전송을 중단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됨.
- B 위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임. 필요하다면 보호원에서 저작권법 개정도 검토하고, 단속 관련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안전에 대해서 더 의견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 내지 51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2번 내지 21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49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아씨두리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06번은 드라마 '아씨두리안'으로, 2023. 6. 24.부터 방영중인 드라마의 최신화인 12화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드라마 '남남'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63번은 드라마 '남남'임. 2023. 7. 17.부터 방영중인 드라마의 4화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06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임. 2023. 1. 4. 극장 개봉하여 현재까지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52번부터 2153번까지 총 3,495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2번 내지 215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21507호~123659호(순번 1번~2153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940호~17142호(순번 1번~203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14.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